

- 2018년 1분기 주민등록 및 세외수입 분야 -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특정감사 결과보고

감사 결과

- ▶ 2017년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 결과 주민등록 및 세외수입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자 2018년 1분기 업무처리내역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음.
- ▶ 주민등록 과태료, 수입증지 일일결산, 주민등록증 수수료, 주민등록 사실조사 업무 등 총 29건의 부적정(또는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에 대해 행정상 조치(시정 25건, 주의 4건), 재정상 조치 282,400원(과오납금반환 23,700원, 환급 55,000원, 추정 203,700원)을 처분 요구하고자 함.

I

감사개요

1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자체감사의 종류)
-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체감사규칙」 제5조(감사의 종류 및 실시 주기)
- 2018년 감사 종합계획 [감사실-8032 (2017. 12. 28.)]

2 감사대상기관 및 범위

- 감 사 반 : 감사담당 외 3명
- 감사기간 : 2018. 4. 30. ~ 2018. 5. 4.(8일간)
- 감 사 장 : 상설감사장
- 감사대상 : 옥련1동 등 13개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감사분야 : 주민등록 및 세외수입 분야(2018년 1분기)

3 증점감사 사항

분야	감사사항
주민등록 및 세외수입분야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수수료 부과·징수 ○ 주민등록 신고(신청) 지연 과태료 부과·징수 - 주민등록증, 재등록 신고 등 ○ 주민등록 사실조사 및 말소 처리 실태 등 ○ 통합민원발급기 수입증지 납부 처리 ○ 세외수입 거래통장 관리 실태 등

II 감사대상기관 주요현황

1 일반현황

(기준일 : 2018. 3.31.)

기관명	면 적 (km ²)	세대수	인 구(명)			행정조직		행정인력 (정원/현원)
			계	남	여	통	반	
계	50.78	125,748	339,099	168,769	170,330	487	2,515	159/152
옥련1동	2.15	8,395	21,547	10,753	10,794	32	152	12/12
옥련2동	1.93	8,116	22,733	11,258	11,475	28	169	12/12
선학동	2.41	8,209	18,981	9,691	9,290	36	176	13/14
연수1동	1.52	10,795	23,167	12,482	10,685	49	254	13/13
연수2동	1.0	9,833	23,134	11,352	11,782	35	210	13/13
연수3동	1.0	7,664	18,437	8,772	9,665	33	165	13/13
청학동	2.39	12,638	28,020	14,399	13,621	47	259	13/13
동춘1동	3.30	5,818	17,657	8,703	8,954	33	141	10/9
동춘2동	1.72	6,873	20,135	9,921	10,214	30	131	10/9
동춘3동	0.7	5,828	19,676	9,596	10,080	28	113	10/10
송도1동	9.7	10,724	34,597	17,086	17,511	39	194	11/10
송도2동	12.22	17,181	52,966	25,992	26,974	57	322	17/14
송도3동	10.74	13,674	38,049	18,764	19,285	40	229	12/10

2 업무처리 현황

(기준일 : 2018. 3.31.)

기관명	주민등록 과태료부과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 말소	비고
옥련1동	13	194	283	18	
옥련2동	8	184	504	4	
선학동	21	160	282	41	
연수1동	47	229	408	72	
연수2동	9	202	422	38	
연수3동	3	140	303	5	
청학동	23	263	374	19	
동춘1동	1	145	411	4	
동춘2동	10	23	300	1	
동춘3동	4	172	362	1	
송도1동	13	156	652	4	
송도2동	8	31	769	7	
송도3동	18	251	514	4	

Ⅲ

감사 결과

1 총 평

- ▶ 매년 실시(동별 3년 주기) 되고 있는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종합 감사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사례를 전파하여, 주민등록 담당자의 관련 법규 및 지침 등 숙지를 위한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일일결산 시 담당업무의 적법 처리 여부 및 수수료 인증 금액 적정 여부 등을 재확인하도록 개선사항을 통보하였으나
- ▶ 대민 최일선 창구인 주민등록 민원업무의 경우 잦은 인사발령과 업무 분장, 또는 신규직원 위주의 배치로 인해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숙지 하지 못하여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사례가 많았다.

- ▶ 이에 따라, 주민등록 및 세외수입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자 2018년 1분기 업무처리내역에 대해 특정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수입증지 수입금 일일결산에 관한 사항은 13개동 모두 지적되었고,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및 경감, 주민등록증 수수료 징수, 주민등록 사실조사 분야에서 부적정한 업무 처리가 확인되었다.
- ▶ 2016년과 2017년에 종합감사를 실시한 옥련2동, 연수3동, 동춘3동은 업무의 상당 부분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사발령 및 신규 직원 배치에 따라 담당자의 주민등록 업무 담당기간이 짧은 동에서 부적정한 업무 처리가 더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어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는 어려움이 있겠으나 감사 지적사례를 참고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업무 종료 후 일일결산 시 각 업무별 담당자들이 민원처리의 적법성 및 수수료 부과의 적정성 등을 확인 검토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분야에 대하여 조속한 시정 조치는 물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답습하는 행정이 아닌 직무 교육 및 업무 연찬을 강화하여 반드시 관련 법규 및 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 ▶ 2018년 1분기 주민등록 및 세외수입 분야 특정감사 실시결과 주민등록 과태료, 수입증지 일일결산, 주민등록증 수수료, 주민등록 사실조사 업무 등 총 29건의 부적정(또는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에 대해 행정상 조치(시정 25건, 주의 4건), 재정상 조치 281,400원(과오납금반환 22,700원, 환급 55,000원, 추징 203,700원)을 처분 요구하고자 한다.

2 지적사항 총괄

□ 처분 현황별

구 분	처 분 현 황	행 정 상 조 치 (건)		재 정 상 조 치 (천 원)	신 분 상 조 치 (건)	비 고 (처 분 보 류)
		시 정	주 의	환 수 . 환 급 . 추 징		
계	29	25	4	총 계 281,400원 과오납금반환 22,700원 환급 55,000원 추징 203,700원	-	7건
옥 련 1 동	2	2	-	과오납금반환 400원 추징 5,000원	-	1건 (과태료)
옥 련 2 동	1	1	-	과오납금반환 200원	-	1건 (과태료)
선 학 동	3	2	1	환급 10,000원 추징 83,800원	-	1건 (과태료)
연 수 1 동	3	3	-	환급 10,000원 추징 4,600원	-	
연 수 2 동	3	2	1	환급 10,000원 추징 7,200원	-	
연 수 3 동	1	1	-	추징 1,800원	-	
청 학 동	2	2	-	추징 3,200원	-	1건 (과태료)
동 춘 1 동	2	2	-	환급 5,000원 추징 31,600원	-	
동 춘 2 동	4	3	1	과오납금반환 22,000원 추징 5,000원	-	
동 춘 3 동	1	1	-	과오납금반환 100원	-	
송 도 1 동	2	1	1	추징 16,200원	-	1건 (과태료)
송 도 2 동	3	3	-	환급 5,000원 추징 21,000원	-	1건 (과태료)
송 도 3 동	2	2	-	환급 15,000원 추징 24,300원	-	1건 (과태료)

□ 업무 분야별

구 분	계	주민등록 과태료	수입증지 일일결산	주민등록증 수수료	주민등록 사실조사	신용카드가맹점 정보변경
계	29	4	13	8	1	3
옥련 1 동	2	-	1	1	-	-
옥련 2 동	1	-	1	-	-	-
선 학 동	3	-	1	1	1	-
연 수 1 동	3	-	1	1	-	1
연 수 2 동	3	1	1	1	-	-
연 수 3 동	1	-	1	-	-	-
청 학 동	2	-	1	-	-	1
동 춘 1 동	2	-	1	1	-	-
동 춘 2 동	4	1	1	1	-	1
동 춘 3 동	1	-	1	-	-	-
송 도 1 동	2	1	1	-	-	-
송 도 2 동	3	1	1	1	-	-
송 도 3 동	2	-	1	1	-	-

3 동별 처분요구 목록

연도	동명	지 적 사 항	처분요구			비고
			행정상	재정상(원)	신분상	
	계	29건(시정 25건, 주의 4건) / 재정상 282,400원 (과오납금반환 23,700원 / 환급 55,000원 / 추징 203,700원)			-	
1	옥련1동 (2건)	수입증지 수입금 일일결산에 관한 사항 ☞ 결손처분 누락	시정	과오납금반환 400	-	
2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에 관한 사항 ☞ 분실재발급 수수료 미징수(1건)	시정	추징 5,000	-	
3	옥련2동 (1건)	수입증지 수입금 일일결산에 관한 사항 ☞ 결손처분 금액 오류	시정	과오납금반환 200	-	
4	선학동 (3건)	수입증지 수입금 일일결산에 관한 사항 ☞ 결손처분 누락, 면제 또는 공용인증 결손 등	시정	추징 38,800	-	
5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수수료 면제 해당 건 수수료 징수(2건) 분실재발급 수수료 미징수(9건)	시정	환급 10,000 추징 45,000	-	
6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 ☞ 사실조사서 조사자 확인 누락 등 작성 소홀	주의	-	-	

연도	동명	지 적 사 항	처분요구			비고
			행정상	재정상(원)	신분상	
7	연수1동 (3건)	수입증지 수입금 일일결산에 관한 사항 ☞ 결손처분 누락, 면제 또는 공용인증 결손 등	시정	추징 4,600	-	
8		주민등록증 회수 및 재발급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수수료 면제 해당 건 수수료 징수(2건)	시정	환급 10,000	-	
9		신용카드 가맹점 대표자 변경에 관한 사항 ☞ 대표자(동장) 변경에 따른 가맹점 정보 변경 미이행	시정	-	-	
10	연수2동 (3건)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 ☞ 의견제출 등 사전통지절차 미이행(3건)	주의	-	-	
11		수입증지 수입금 일일결산에 관한 사항 ☞ 결손처분 누락, 면제 또는 공용인증 결손 등	시정	추징 2,200	-	
12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수수료 면제 해당 건 수수료 징수(2건) 분실재발급 수수료 미징수(1건)	시정	환급 10,000 추징 5,000	-	
13	연수3동 (1건)	수입증지 수입금 일일결산에 관한 사항 ☞ 면제 또는 공용인증 결손, 결손금액 오류	시정	추징 1,800	-	
14	청학동 (2건)	수입증지 수입금 일일결산에 관한 사항 ☞ 면제 또는 공용인증 결손	시정	추징 3,200	-	
15		신용카드 가맹점 대표자 변경에 관한 사항 ☞ 대표자(동장) 변경에 따른 가맹점 정보 변경 미이행	시정	-	-	
16	동춘1동 (2건)	수입증지 수입금 일일결산에 관한 사항 ☞ 결손처분 누락, 면제인증 결손 등	시정	추징 26,600	-	
17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수수료 면제 해당 건 수수료 징수(1건) 훼손(본인부주의) 재발급 수수료 미징수(1건)	시정	환급 5,000 추징 5,000	-	
18	동춘2동 (4건)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 ☞ 의견제출 등 사전통지절차 누락 또는 지연(6건)	주의	-	-	
19		수입증지 수입금 일일결산에 관한 사항 ☞ 면제 또는 공용인증 결손, 세입처리 금액 오류	시정	과오납금변환 22,000	-	
20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수수료 부과 대상 건 수수료 미징수(1건)	시정	추징 5,000	-	
21		신용카드 가맹점 대표자 변경에 관한 사항 ☞ 대표자(동장) 변경에 따른 가맹점 정보 변경 미이행	시정	-	-	
22	동춘3동 (1건)	수입증지 수입금 일일결산에 관한 사항 ☞ 면제인증 결손, 결손금액 오류	시정	과오납금변환 100	-	
23	송도1동 (2건)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 ☞ 의견제출 등 사전통지절차 지연(3건)	주의	-	-	
24		수입증지 수입금 일일결산에 관한 사항 ☞ 결손 증빙서류 미첨부	시정	추징 16,200	-	

연번	동명	지 적 사 항	처분요구			비고
			행정상	재정상(원)	신분상	
25	송도2동 (3건)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과태료 경감 부적정(2건) 의견제출 등 사전통지절차 미이행(3건)	시정	추징 20,000	-	
26		수입증지 수입금 일일결산에 관한 사항 ㉠ 면제인증 결손, 결손 증빙서류 미첨부 등	시정	추징 1,000	-	
27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수수료 면제 해당 건 수수료 징수(1건)	시정	환급 5,000	-	
28	송도3동 (2건)	수입증지 수입금 일일결산에 관한 사항 ㉠ 결손 증빙서류 미첨부	시정	추징 19,300	-	
29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수수료 면제 해당 건 수수료 징수(3건) 분실재발급 수수료 미징수(1건)	시정	환급 15,000 추징 5,000	-	

4 처분요구 보류 목록

연번	동명	지 적 사 항	처분요구			비고
			행정상	재정상(원)	신분상	
계		7건(시정 7건) / 재정상 65,000원 환급			-	
1	옥련1동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 부적정(2017.12.1. 개정) ㉡ 미성년자의 경우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함. ㉢ 주민등록 과태료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같은 규칙 제21조 제3항의 규정 중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에 따라 과태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것이 4분의 3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경감한 것이기 때문에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아니라는 의견이 있었음. ㉣ 행정안전부의 질의답변 결과에 따라 추후 처분요구 하고자 함.	시정	환급 6,000	-	
2	옥련2동		시정	환급 6,000	-	
3	선학동		시정	환급 3,000	-	
4	청학동		시정	환급 8,000	-	
5	송도1동		시정	환급 10,000	-	
6	송도2동		시정	환급 16,000	-	
7	송도3동		시정	환급 16,000		

IV

분야별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

■ 주민등록 과태료 분야

1.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

【 연수2동, 동춘2동, 송도1동 】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주민등록법」 제40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각 10만원 이하 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일제정리 기간 중에는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과태료 부과·징수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주민등록 사무편람(행정안전부)」 八. 수수료·사용료 및 과태료·벌칙에 따르면 과태료의 금액은 신고(신청)지연기간에 따라 부과하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
- 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5. 미성년자

때에는 의견제출기간(10일) 및 자진납부 시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15일 이내의 납부기한과 이의신청방법·기간을 정하여 과태료납입고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 그러나, 연수2동, 동춘2동, 송도1동에서는 주민등록 재등록신고자 또는 주민등록증 신청 지연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시 과태료 감경 및 의견제출 등에 대한 사전통지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사실이 있다.

2.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송도2동 】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및 시정 (추징 20,000원)

- 「주민등록법」 제40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각 10만원 이하 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일제정리 기간 중에는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²⁾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과태료 부과·징수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주민등록 사무편람(행정안전부)」 八. 수수료·사용료 및 과태료·벌칙에 따르면 과태료의 금액은 신고(신청)지연기간에 따라 부과하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견제출기간(10일) 및 자진납부 시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15일 이내의 납부기한과 이의신청방법·기간을 정하여 과태료납입고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 그러나, 송도2동 주민센터에서는 주민등록 재등록신고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에 따른 과태료 감경 및 의견제출 등에 대한 사전통지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감경·부과·징수한 사실이 있으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한 사실이 있다.

■ 수입증지 수입금 일일결산 분야

1. 수입증지 수입금 일일결산에 관한 사항【 13개 동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재정상

옥련1동 과오납금반환 400원 / 옥련2동 과오납금반환 200원 / 선학동 추징 38,800원 / 연수1동 추징 4,600원 / 연수2동 추징 2,200원 / 연수3동 추징 1,800원 / 청학동 추징 3,200원 / 동춘1동 추징 26,600원 / 동춘2동 과오납금반환 22,000원 / 동춘3동 과오납금반환 100원 / 송도1동 추징 16,200원 / 송도2동 추징 1,000원 / 송도3동 추징 19,300원

- 「주민등록법」 제4조(수수료와 과태료 등의 귀속)에 따르면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수납하는 수수료·사용료 및 과태료는 구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 「인천광역시연수구 수입증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르면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1호 서식에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수입증지 발행 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일일 전표 등을 첨부하여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결산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민원처리기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사유로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는 그 서식의 여백에 별표 2의 결손인을 소인하여 결손 처리하고,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 표시 면을 첨부하여 수입증지 발생금액과 수입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같은 조례 제7조에서는 수입증지 발행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 따라서, 수입증지 수입금의 일일결산 시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 표시 면을 첨부하여 수입증지 발행금액과 수입금액의 차액을 명확히 확인하여 수입증지 수입금을 납입하였어야 한다.
- 그러나, 각 동에서는 면제, 공용 인증 또는 인증을 누락한 서류를 결손 처리하거나, 결손 누락, 결손 건수 및 금액 오류, 수입금 계산오류, 결손 증빙서류 미첨부 등 수입증지 발행금액과 수입금액의 차액 등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수입금을 적게 납입하거나 많이 납입한 사실이 있다.

■ 주민등록증 수수료 분야

1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에 관한 사항【 8개 동 】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재정상

옥련1동 추징 5,000원 / 선학동 환급 10,000원, 추징 45,000원 / 연수1동 환급 10,000원 / 연수2동 환급 10,000원, 추징 5,000원 / 동춘1동 환급 5,000원, 추징 5,000원 / 동춘2동 추징 5,000원 / 송도2동 환급 5,000원 / 송도3동 환급 15,000원, 추징 5,000원

-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하는 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재발급하는 경우와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당 5천원을 수수료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재발급할 때 또는 시행규칙 제11조 각 호³⁾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발급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또한, 「주민등록 사무편람(행정안전부)」 五. 주민등록증 발급 및 관리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의 자연적인 결함(사진이나 글씨 등이 닳아 없어짐 등), 성명·생년월일 또는 서열 등 주소 외의 기록사항이 변경, 주민등록증의 변경내용이 부족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하기 위하여 귀국하고 증의 재발급을 신청, 재해·재난·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외과적 수술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미용·단순한 용모변경·사진변경·성형으로 인한 용모변경 등은 수수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한편, 보안 미적용증(2006.11.1.이전 발급된 증)은 주민등록증을 반납한다면 수수료는 무료이나 반납하지 않는다면 수수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 그러나, 옥련1동 외 7개 동에서는 분실 또는 훼손(본인부주의), 용모변경 등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 대상임에도 수수료를 미징수 하거나, 2006.11.1.이전 발급된 증을 반납하여 보안기능추가로 재발급 또는 성명 변경 등 수수료 면제 사유에 해당함에도 수수료 5,000원을 징수한 사실이 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 분야

1.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 【 선학동 】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1항에 따르면 시장·

3) 1. 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증 자체의 결함 때문에 자연적으로 훼손된 경우
 2. 법 제27조제1항제2호 및 영 제40조제3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영 제40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영 제40조제3항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연적 재해·재난으로 인한 경우
 5. 영 제40조제3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최초로 재발급하는 경우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다음 각 호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규정된 사항을 이 법에 규정된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2.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규정된 사항을 부실하게 신고한 때, 3.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규정된 사항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제2항에서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실 조사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하며, 이 사실조사서에는 법 제11조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신고의무자의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면 이장이나 관계 공무원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주민등록 사무편람(행정안전부)」 二. 주민등록사항의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에 따르면 사실조사의 요령으로 사실조사서에 신고의무자(세대주나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본인)의 확인을 받고,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통·리장 또는 공무원의 사실조사로써 갈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선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추진하면서 사실조사서 작성 시 신고의무자 또는 통·리장 확인 및 조사일자, 조사자 확인을 누락하여 사실조사서 작성을 소홀하게 한 사실이 있다.

■ 신용카드 가맹점 정보 분야

1. 신용카드 가맹점 대표자 변경에 관한 사항 【 연수1동, 청학동, 동춘2동 】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가맹점 정보 변경)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설립) 제1항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여신전문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고, 제64조(업무) 제8호에 따르면 협회는 표준약관의 제정 및 개정 업무를 수행한다.

- 이에 따라 여신금융협회에서 제정된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6장 보칙의 제 20조(계약 및 변경사항의 통보) 제3항에 따르면 가맹점은 카드사에 신고한 상호, 대표자, 예금계좌, 업종, 영업권의 양도 및 소재지 등 중요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카드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연락처 등의 변경 시에는 서면, 전화,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그러나, 연수1동 외 2개동에서는 인사발령에 따라 대표자(동장)가 변경되었음에도 대표자 변경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